

## 법령코너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정 1999. 6. 25 기술표준원고시제1999-111호]

개정 2001. 3.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73호

2002. 6.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2-566호

2004. 7.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8호

2005. 8. 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2008. 6. 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3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 · 기술심의회 · 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 · 단체 · 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장 임명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정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회 등의 회의소집) ① 심의회·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심의회·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회의 소집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업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운영간사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간사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7조(산업표준제정안의 작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산업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제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법령코너

### 1. 표준의 명칭

### 2. 표준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 3. 의견제출 기한

### 4. 의견 제출처

###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제정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제정)안 검토 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학계·연구소·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분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준의 개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표준의 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는 때에는 표준의 명칭 외에 표준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에 따른 표준 제정안 또는 제8조에 따른 표준의 확인·개정(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심의)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조2항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표준 중 시험·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받은 자는 인증 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 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2호 및 3호 서류는 제외한다.

1. 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실비 등이 있는 경우)
4. 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⑥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시판품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 4 장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11조(인증업무규정)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할 때는 신청인의 구비서류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코너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심의 및 직무교육)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취소·정지 등을 위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해당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 제 6 장 제품인증 등의 인증

제14조(인증대상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판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인증심사기준)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표준별로 제정하여 이를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생산공장 및 서비스 수행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후 표준별로 인증심사기준 제정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품인증의 경우 제조설비·검사설비·제조공정이 이미 지정된 표시대상품목 등의 심사기준과 같거나 유사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의 개정·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개정의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증 받은 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KS인증서 및 제교부신청서(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제교부가 필요한 경우)
2. 제품인증의 경우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3.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5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6조(인증심사절차) ① 인증기관이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관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인증심사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인증신청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지정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인증심사관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인수는 전 항목 심사의 경우 2인(공장심사 심사항목의 과반 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이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품목 3인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인수는 사업장심사(본사포함) 2인, 서비스심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사업장이 1개 추가시마다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를 각각 1인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신청분야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에 각각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지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관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를 완료한 경우 공장심사는 별지 제10호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는 규칙 별표8에 따른 서비스표준별 사업장심사보고서·서비스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결과 제17조에 따른 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심사결과판정기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8조(공인 시험·검사기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19조(KS인증) ① KS인증은 규칙 제13조의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인증구분에 따르고 인증여부의 결정은 별표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동일인이 같은 표준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등급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하고, 서비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 ③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 준수
- 제20조(인증신청의 철회) ①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 법령코너

### 제 6 장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제21조(정기심사) ① 인증 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가 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 확인으로 정기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6조 내지 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규칙 제16조의 정기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료를 당해 품목의 대표적인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인 1개 인증업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⑥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품질관리담당자,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 보유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⑦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⑧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판품조사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 영 제27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KS인증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이하 "시판품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인증구분(종류?등급)별로 채취하며, 시료의 크기는 당해 품목의 인증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품목별, 서비스 분야별 세부적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⑥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7 장 지정심사기관

제23조(지정심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표준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규칙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인 이상 확보할 것
  3. 제품인증의 경우 시험·검사·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며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광공업품의 품목 등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검사설비"라 한다)를 보유할 것. 단,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현장시험을 허용하는 시험·검사설비는 예외로 한다.
  4. 인증심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심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제품인증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인증심사업무의 범위”라 한다)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5.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6. 제품인증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인정현황 관계자료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에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1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2. 제2항에 따른 의한 제출서류 내용의 적정여부
- 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정심사기관 지정심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정대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별로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분야와 예비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⑧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법령코너

1. 지정심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시
2.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제24조(지정심사기관의 지위승계) ① 지정심사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 지정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업무규정) 지정심사기관 지정 대상기관은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사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순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제품 심사를 위한 시료 채취) 제품 심사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시료는 심사 당인 제품 재고 중에서 당해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제27조(지정심사기관의 순수사항 등) ① 지정심사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순수사항을 위반한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8 장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28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 심사를 지원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시정을 요청할 때에는 시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 2. 정관

## 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 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 5. 품질관리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 규정("제품 심사업무 규정"이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등지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정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제품심사업무규정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0조(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제28조제1항 및 제5항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품심사의 지원) ① 인증기관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하여금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 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품심사 계획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이나 제품심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심사 요청받은 때에는 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제품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 받은 자에게 제품심사일 7일전까지 제품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반은 당해 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과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1인)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품심사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품심사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부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한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법령코너

제32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제품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9 장 서비스 품질관리단체

제33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별표9의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4.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현장조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현장조사업무규정이 현장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제35조(현장조사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현장조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10 장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제37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가공 및 조립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통일·단순화 품목·종목 또는 표준에 대한 의견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생산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9조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일·단순화 명령을 한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 11 장 단체표준의 전환 등

제39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제2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 ② 한국산업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한국산업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 12 장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제4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2. 제42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설비사용 계약 또는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된 공익법인 중 시험·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법령코너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신청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단체표준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인 것

5.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설비"라 한다)의 보유현황 또는 임차사용계약서. 다만,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하 "제품검사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회의에서 우수한 단체표준을 심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의 표시방법·도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절차, 기준비달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6. 심사원의 등록·운영계획 및 준수사항

7. 제품검사원의 운영계획 및 준수사항

8. 단체표준을 인증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제43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제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사람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정부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기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식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44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과 그 생산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제40조에 따른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허위로 교부 하는 경우

## 제 13 장 보 칙

제46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명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7조(인증기관 등의 자체 점검) ①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심사·정기심사 업무 또는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령코너

②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또는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인증내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실적 및 개선명령,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업체의 처분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시결과 별표 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내용
4. 인증심사원 변동 등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산업표준화 교육 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통신교육, 인터넷교육 등), 실습교육 등을 과정보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시한다.

### 부 칙 (2008.6.3)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469호(2005.8.5)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469호)의 규정중 이 요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 요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 156 호

2008년『품질경쟁력 우수기업』선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 2008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선정요령

## 1. 기본방침

- 우리 여건에 맞는 품질경쟁력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
- 산·학·연 및 관련단체 등의 품질경영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운영

- 선정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 품질경쟁력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벤치마킹 자료제공

2. 주관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 3. 선정대상 산업분야 및 업종

- 제조업 :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화학, 섬유, 자동차(운수장비 포함), 기타(일용품, 식료품, 요업, 의료품, 전자제 등)
- 건설업 : 토목, 건축
- 공공 서비스업 : 공공기관, 공기업(정부투자·출자기관, 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4. 신청자격 및 방법

#### 가. 신청자격

- 품질경영체제와 기술력을 갖추고 기업혁신,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경영, 수출 및 내수판매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제조업, 건설업, 공공 서비스업)

#### 나. 신청방법

- 접수처 :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팀  
우)135 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 7 한국기술센터 20층  
TEL : 02)6009-4623 ~4 FAX : 02)6009-4619  
E-mail : [yych@ksa.or.kr](mailto:yych@ksa.or.kr)(유영철 수석연구원)

- 접수기한 : 2008. 7. 31(목)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다. 신청구비서류

-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기술력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3) 자체평가 결과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 1부  
(<http://www.q-korea.net>에 접속, 데이터 입력·평가)
- (4) 약도 1부(가능한 상세하게 기술 요망)
- (5) 상기의 원본서류 제본 및 파일이 담긴 CD 1장(신청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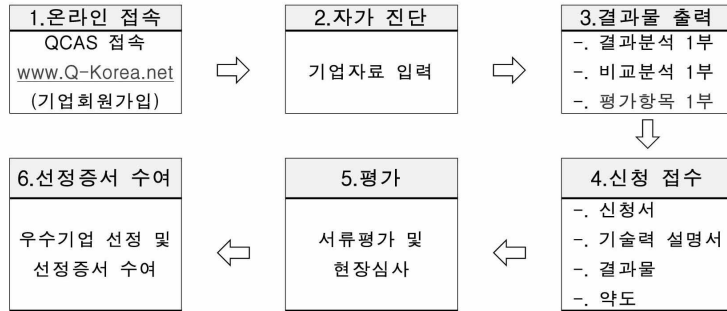
####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심사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현지 심사를 실시
- 신청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국가품질망(<http://www.Q-korea.net>)의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7월 31일(목)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법령코너

### 〈 신청 절차도 〉



## 5.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서류심사

-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자가 진단 권리와 자산규모, 매출액, 수출액, 선도적·독창적인 기술보유 여부 등을 분야별 전문위원의 심의를 통해 심사
- 최근 2년('06 ~ '07) 선정된 업체는 서류심사 면제(구비서류는 제출)

※ 신청업체에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한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산업별 평가분야를 자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

### [ 평가 항목 ]

산 업 별	평 가 분 야	
공 동 분 야	<input type="checkbox"/> 전략 및 관리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정보분석관리 <input type="checkbox"/> CS(고객만족)	<input type="checkbox"/> 기업문화/인재육성 <input type="checkbox"/> 품질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경영실적
제 조 업	<input type="checkbox"/> TPM <input type="checkbox"/> 제품개발 및 기술력 <input type="checkbox"/> 소집단개선헌능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input type="checkbox"/> 물류 <input type="checkbox"/> PL(제조물 책임) <input type="checkbox"/> SQC/SPC
건 설 업	<input type="checkbox"/> 제안활동	<input type="checkbox"/> 건설시공 및 환경
공공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신청 업종 특정별로 제조업 및 건설업 평가분야 관련 항목 적용	

※ TPM :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종합설비보전) / SQC : Statistic Quality Control (통계적 품질관리)  
 SPC : Statistic Process Control (통계적 공정관리) / PL : 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CS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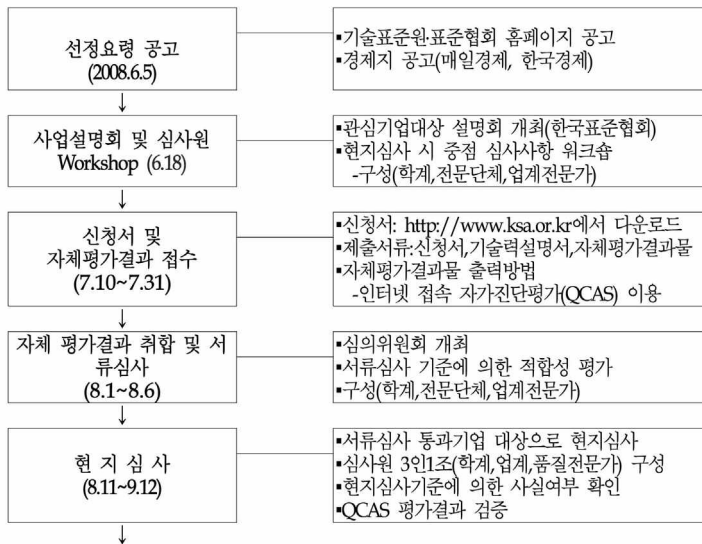
나. 현지심사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실시 ('06~'07년도 선정된 업체 포함)
- 심사위원
  - 산·학·연 및 관련단체 등의 품질경영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 구성 운영(1인 심사(3~4인/업체당))
- 심사내용
  -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자가진단에 의한 평가분야별 자체 평가한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을 중심으로 심사
  - 각 기업체는 평가항목별 실시 여부 등을 증명하여야 함
- 채 점
  - 5등급(A, B, C, D, E)의 평가분항에 의하여 심사항목별 수준평가
  - 평가등급별 자동배점에 의하여 채점
- 배 점
  - 산업별 가중치 부여로 각각 총점 1,000점 만점으로 조정
  - 산업별 가중치 부여는 우수기업선정위원회에서 별도 결정
- 가산점
  - 현지심사 수검 준비 수준 평가 10/1,000점 부여
  -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 10/1,000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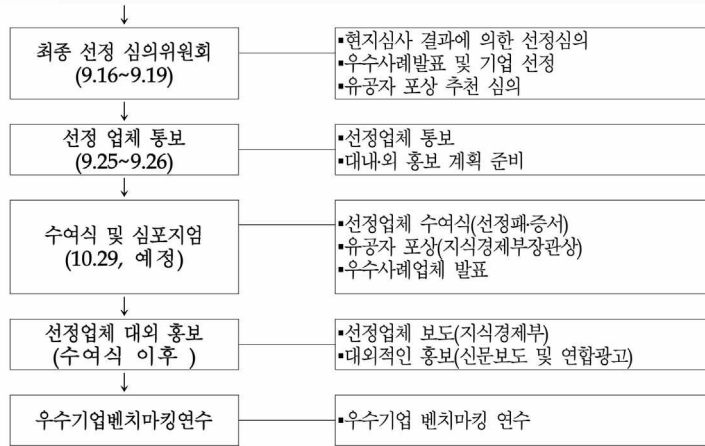
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 현지심사 결과 평점을 종합하여 심사위원(15명 이내)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현지심사 평점을 종합하여 선정
- ※ 선정 또는 불합격 결과를 당해 업체에 별도로 개별 통보

라. 선정 절차



## 법령코너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

#### 가.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증서, 선정패 지급, 선정마크 사용권 부여
- 국문·영문 홍보책자 제작, 이를 KOITA 해외무역관, 관련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
- 우수사례집을 별도 발간하여 관련단체·업계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도록 제공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
- 선정현관 제공(실비 부담)

#### 나. 연합광고 참여기업 지원

- 일간지 및 경제지 연합광고
- 협회 "품질경영" 월간지 홍보
- 기업별 특집 기사화(경제지)

### 7. 주요 행사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2008. 10. 29 14:00 - / 대한상공회의소 (예정)

나. 참가대상 :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관계자(300여명)

다. 행사내용

-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증서 수여식 및 유공자(기업)포상(지식경제부장관상)
- 품질경쟁력 심포지엄 및 우수사례 발표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 - 29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기술표준원장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개정 기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대상	주요내용	개정(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5 (빙삭기)	'육안 확인' 등 중복문구 삭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8 (보온·보냉용기)	용기 호칭용량 단위를 'L'로 변경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9 (쇼핑카드)	강도측정의 밀도단위를 'kg/dm <sup>3</sup> 로 변경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1 (스노보드)	문구표기 수정 및 그림(나사구멍 길이)추가	붙임 참조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3 (스키용구)	KS 및 ISO 규격으로 부합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시/ 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게재는 생략]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유사 산악용 자전거의 차체의 강도 시험에 '내하중 낙하 충격성시험' 추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1 (일회용기저귀)	종류추가(기저귀 라이너) 및 용어 표기 변경(형광증백제 용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3 (침대매트리스)	'압축영구 줄임률' 등 용어표기 변경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7 (휴대용사다리)	버팀대 강도시험의 하중을 '450N'으로 변경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령코너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 - 28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기술표준원장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개정 기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대상	주요 내용	개정(안)
안전인증 부속서 13 (운동용 안전모)	시험의 전처리 조건 중 노출시간을 4~6시간으로 변경	붙임 참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a href="http://www.kats.go.kr">www.kats.go.kr</a> ) 고시/ 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 게재는 생략]
안전인증 부속서 14 (유모차)	'배면과 좌석면의 각도' 등 용어 표기 변경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7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실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기술표준원장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안) 입안예고

## 1. 개정취지

- 국제표준(IEC)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여 적용중에 있으나, 새로운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부 시험항목이 기존에 20여년간 적용해 왔던 구 전기용품 기술기준과 비교하여 규격체계가 다르고 요구사항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업계와 인증기관의 안전기준 비숙지와 국내현실 등을 고려하여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임

## 2. 주요 개정 내용

## 부 칙(고시 제2008- 호)

- ① (시행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1별표1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17(전기모토,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 의 개별 요구사항)의 30(내열, 내화성 및 내드래킹성), 30.1항의 내용 중 K60335-1의 30.1항을 따르는 충전부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내열(볼프레스) 시험온도 "125℃"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75℃"로 적용한다.

##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8.07.14.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차관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의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코너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 18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등) 및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제5조(인증제도 운용 및 포상)에 의거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 '08년도 서비스품질혁신 정부포상 계획 공고

### 1. 포상개요

#### 가. 목 적

- 서비스품질 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서비스산업의 품질혁신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

#### 나. 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등)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제5조(인증제도 운용 및 포상)

#### 다. 포상시기

- 일 시 : 2008. 10. 31 (당)
- 장 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강당

### 2. 포상의 훈격 및 규모

훈 격	포상 규모	대 상
○ 대통령표창	○	유공기업
○ 국무총리표창	○	부 분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12	유공기업 및 유공자 부 분

※ 구체적인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포상협의 후 확정

### 3. 신청자격

#### 가. 유공기업 부문

- 한국서비스품질지우수기업 인증기업

#### 나. 유공자 부문

- 한국서비스품질지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임직원

### 4. 포상 기준

-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및 지식경제부장관표창규정에 따름

#### 가. 수공기간

- 포상 분야에서 5년 이상

#### 나. 재포상 금지기간(추진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0104포장의 종류를 구분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또는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장관표창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기업은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5. 포상 추천 제한

####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진을 제한함
- ※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 총점의 5%내시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법령코너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지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불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기업표창

- 2년 이내에 기업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가, '라.' 중 해당 사항

### 6. 공적심사

가. 심사 구성

- 포상심사는 서류심사, 포상자분단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 3단계로 실시함

나.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구비서류의 불미 여부, 포상 기준, 포상 추천 제한 사항 등을 심사함

니. 포상자분단 심사

- 포상자분단은 민간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포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심사항목
  - 정부포상 공통지표 항목(40% 비중):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서비스품질혁신 특성지표(60% 비중):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창조도

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포상자분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서훈,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천 순위를 정함

##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 7.1 - 7.31 ※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 유효

##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유공기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조서(유공기업용) 1부</li> <li>. 개인정보이용동의서(기업용) 1부</li> <li>.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li> <li>. 공적조서(유공자용) 1부</li> <li>. 개인정보이용동의서(임원용) 1부</li> </ul>	공적조서는 전자문서 화일을 함께 제출
유공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감사 등의 경우에만 제출</li> <li>. 이력서 1부</li> </ul>	

## 다.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상담 및 접수처 : 한국서비스품질전우수기업인증 집행기관  
(집행기관 명단 및 전화번호)
  -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실팀 (전화 : 02-6009-4626)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전화 : 02-554-4890)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전화 : 02-717-1221)
  -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전화 : 02-569-8121)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전화 : 02-738-9001)
- 광고분 및 신청서류 양식 등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ats.go.kr>)
  - ※ 접수된 서류는 인제 반환하지 않음

## 8. 본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및 장관포상업무지침(지식경제부)을 준용함.

| 기술표준 2008.7

